

제314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허 훈 의원 발의)

제 안 설 명 서



2022. 9

서울특별시의회 허 훈 의원
(국민의힘, 도시계획균형위원회)

□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
허 훈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,

□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
시에도 매번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추진 절차를 재계약과
같은 절차를 적용토록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
민간위탁 재위탁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재위탁 시에도 매번
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한 추진 절차를 재계약과 같은 절차를
적용토록 간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시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
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기존 수탁기관이
선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재위탁 개념을
재정의하며 민간위탁 사무의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
보고하는 것으로 시의회 동의를 같음하되, 시의회 동의를 받은
때로부터 6년 경과 후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시에는 동의를
받도록 재위탁 절차를 개선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,
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